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36
------	-----

2009년 2월 25일  
교육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년 1월 21일, 부두완 의원 외 9인

나. 회부일자 : 2009년 1월 2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2009년 2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부두완 의원)

가. 제안이유

해외에 흩어져서 보관되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다시 찾아 문화재에 깃들인 소중한 조상들의 얼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이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목적 (안 제1조)
- 위원회의 기능 (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안 제4조 및 5조)
-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안 제7조 및 8조)
- 위원회의 의견청취 (안 제9조)
- 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안 제10조)
- 기타 운영세칙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동 제정조례안은 「일본 궁내청 소장 의뢰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의뢰반환 활동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것임.
- 하지만, 서울시 문화국에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견이 접수되었음.
  - 첫째, 국가간 외교문제 발생 우려와 관련하여서는 시민위원회에 각계의 전문가와 중앙정부 관계자 등을 참여시켜 충분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며,
  - 둘째, 예산지원 형평성의 문제제기는 시민위원회 활동을 위해 문화국에 반영된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책정되어 있어 다른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하면 될 것이며,
  - 셋째, 안 제3조제3항제1호에서 「일본 궁내청 소장 의뢰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시민위원회에 위원으로 임명한 규정은 시민위원회의 활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동 특별위원회는 6개월간의 활동기간을 갖는 한시 위원회인 반면에 이번에 설치하는 시민위원회는 상설 위원회이므로 두 위원회 상호간의 활발한 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정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면 될 것임.
- 아울러 2008년 12월 21일 「일본 궁내청 소장 의뢰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동 조례안 발의의 건이 논의된 바, '시민위원회'이므로 의원들이 직접 나서

기보다 민간인을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서울시의 입장을 참고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발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음.

- 이 밖에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명칭변경안이 금번 회기에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명칭변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동 조례안에 명시된 특별위원회 명칭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다음 회기에 동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야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구성을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15명 전체를 포함하는 것은 전체 구성원 40명 중 그 비중이 너무 높고, 시민위원회에 시민이 배제되어 구성원의 다양성이 부족하게 될 수 있음.
- 답변 :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시민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5. 토론요지

-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해외유출 문화재 반환운동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참여가 필요함.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위원 구성에서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시민”을 포함하며, “서울특별시 문화국장, 서울역사박물관장”을 “서울특별시 관련 공무원”으로 함.
- 해외에 흩어져 보관되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설립의 취지에 맞도록 전문가와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우리 문화재를 찾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